

# 서울형 문화권 선언을 위한 조사용역 보고서

2016. 06.

(사)문화사회연구소

---

# 목차

## 서울형 문화권 선언을 위한 조사용역 보고서

---

### I. 조사 용역 개요

1. 서울형 문화권 선언을 위한 조사용역의 목적
2. 서울형 문화권 선언을 위한 배경 및 방향
3. 서울형 문화권 선언을 위한 조사용역의 진행 과정

### II. 서울형 문화권 선언을 위한 조사연구 내용

1. 서울형 문화권 선언의 기본 방향 설정
  2. 문화다양성 분야
  3. 문화예술교육 분야
  4. 거버넌스 분야
  5. 도시와 공간 분야
  6. 문화향유 분야
  7. 표현의 자유 분야

### III. 서울형 문화권 선언 관련 국내외 사례

1. 대한민국, <문화헌장>
2. 바르셀로나, <도시의 문화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헌장>
3.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4. 충청북도, <문화헌장>

### IV. 서울 시민문화권 선언(안)

---

---

# I. 조사 용역 개요

## 서울형 문화권 선언을 위한 조사용역 보고서

---

### 1. 서울형 문화권 선언을 위한 조사용역의 목적

- (1) 서울형 문화권 선언을 위한 자료 조사 및 분석
- (2) 서울형 문화권 선언을 위한 국내외 사례 조사 및 분석
- (3) 서울형 문화권 선언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사전 토론
- (4) 서울형 문화권 선언문 초안 작성 및 제시

### 2. 서울형 문화권 선언을 위한 배경 및 방향

#### (1) 서울시 문화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본 원칙

##### ① 문화적 시민권에 기초한 시민문화계획

- 창의성 : 시민의 창의성을 통한 새로운 도시가치 형성
- 자립성 : 공급형 문화사업 중심에서 시민문화의 형성을 지원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
- 시민성 : 시민 자치에 기반한 오픈웨어 전략 활성화

##### ② 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한 통섭적 문화계획

- 순환성 : 지역사회, 생활세계와 선순환 하는 문화정책
- 횡단성 : 예술, 문화산업, 관광, 문화유산, 스포츠 등 문화정책의 영역간 상호보완적인 횡단  
과 연계
- 통섭성 : 문화적 관점에서 교육, 복지, 환경, 마을, 청년, 사회적 경제 등과의 통섭적 연계

③ 문화행정 혁신을 위한 문화거버넌스계획

- 개혁성 : 문화행정 효율성(서울시)과 문화정책 전문성(전문기관)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 로드맵 설계
- 민주성 : 공공 및 민간부문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문화거버넌스 운영체계 구현
- 지속성 :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거버넌스를 위한 법제도 환경 설계

[그림] 서울시 문화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본 원칙



## (2) 서울시 문화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

### [문화적 시민권에 기초한 시민문화계획]

#### ① 문화권리 : 문화적 시민권 선언

-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급되어지는 문화서비스 전달체계, 시혜주의적 관점 탈피
- 스스로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로서 시민문화권 상정
-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을 실현할 수 있고, 자발적 문화활동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고, 문화적 삶의 환경 구성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② 문화기획 : 문화적 도시계획의 수립

- 문화적 공공성에 기반한 도시계획의 수립 및 도시공간 설계
- 일상공간의 문화적 접근성 제고와 생활친화적 문화환경 조성
- 보여지는 문화도시 조성에서 보이지 않는 문화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전환
- 노동, 주거, 교육, 복지, 환경 등의 도시 문제를 문화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문화도시 조성 관점

#### ③ 지역문화 : 행정구획이 아닌 시민문화 활동과 연계된 문화공간 조성

- 시민생활 단위의 문화활동과 결합한 생활권/지역단위 문화공간 확충, 문화공간으로서의 공원 활용도 제고 및 생활권역별 커뮤니티형 광장 조성
- 건강, 자기계발, 교육 등의 욕구에 맞춰 시민 여가생활에 적합한 공간 창출
- 문화자원 밀집, 보전지역 대상 미학적 특화, 기호화 전략 지속 추진  
(남산, 한양도성, 홍대앞, 문래동, 대학로, 동대문, 돌곶이 등)

### [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한 통섭적 문화계획]

#### ④ 창의문화 : 도시운영의 원리로서 개방과 혁신의 문화적 창의성 확대

- 서울시민 개개인의 문화적 감수성과 창조적 역량이 증시되는 도시
- 혁신적 예술창작활동 및 창의적 예술가 발굴·지원 장려
- 문화와 교육의 통섭을 통한 도시 창의성 극대화

⑤ 문화다양성 : 다원주의적 문화민주주의 구현

- 시민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를 고려한 문화정책
  - 중산층 중심,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문화정책 접근 전략 탈피
- 도시내 생활문화의 흐름과 커뮤니티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책 확대
  - 사회경제적 이주의 양적확대에 따른 내외부적 문화다양성 심화
  - 이주노동결혼, 주택난에 따른 도시내 순환이주, 여가시간 대비 노동시간 과다 등으로 정태적 문화공동체 형성과 문화커뮤니티의 물리적·지리적 영역 형성 불가
  - 유동적·동태적 관점의 문화커뮤니티 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관점 필요

⑥ 문화정체성 : 정체성-역사성-미래성이 공존하는 문화도시

- 문화, 역사, 관광정책의 통섭적 접근 전략
- 지역사회 구성원과 외래 관광객을 동시에 고려하는 문화도시 계획
- 근대와 현대를 아우르는 통시적 역사문화자원 발굴, 보전 정책

[문화행정 혁신을 위한 문화거버넌스계획]

⑦ 문화거버넌스 : 목적으로서, 도시운영의 기본 방식으로 문화거버넌스 구현

- 의견수렴 절차 및 제도를 넘어선 공공적 의사결정제도로서 문화거버넌스 구현
- 정부와 시민을 '동반자적 관계'의 역할모형으로 설정
- 지역, 성별, 연령(세대), 직능별 비례 대표성을 고려한 시민문화거버넌스의 구축과 문화분야 참여예산제도의 통합적 운영체계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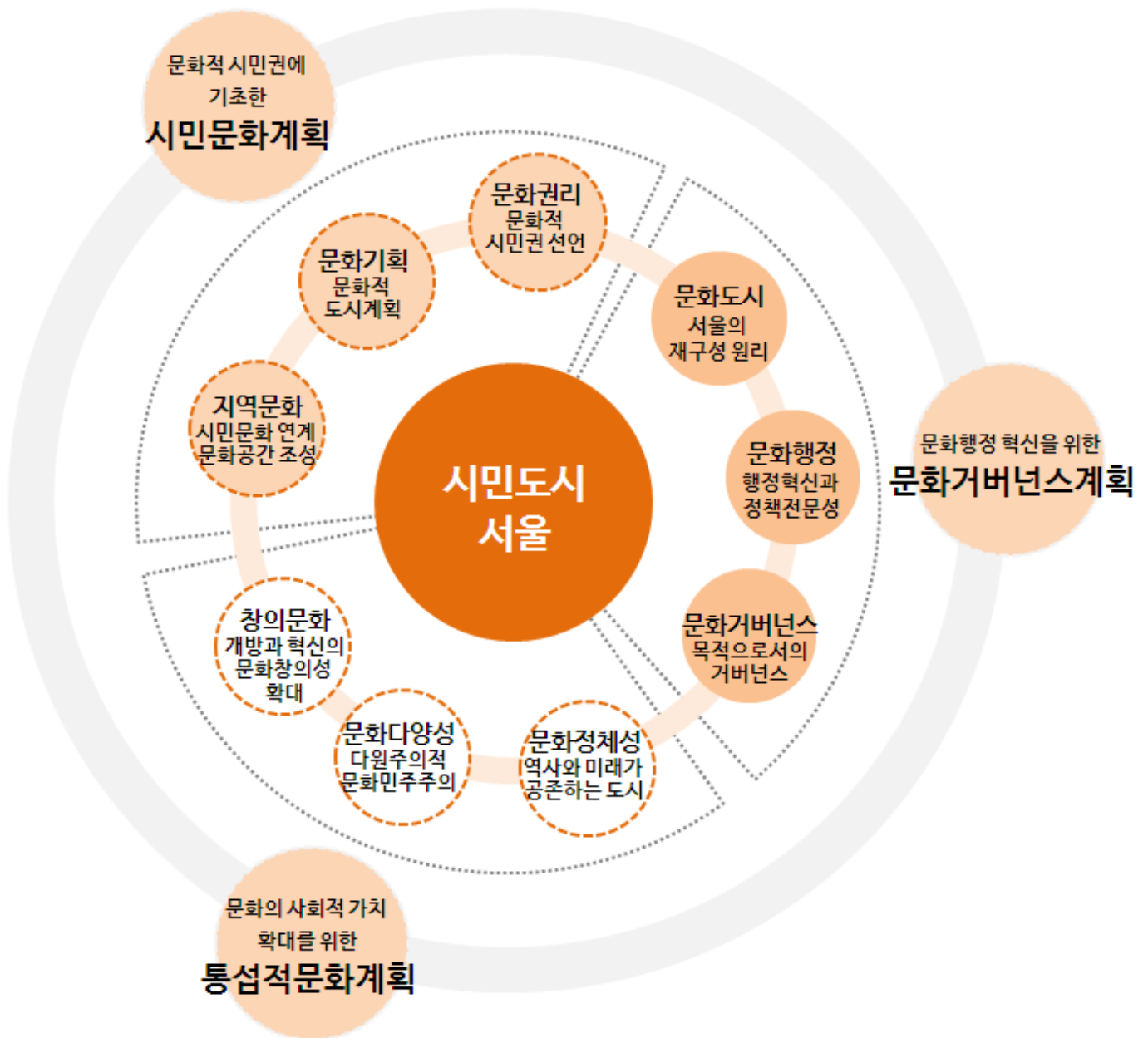
⑧ 문화행정 : 문화행정 혁신과 문화정책 전문성 제고

- 서울문화계획의 중장기적 정책목표 실행을 위한 정책추진체계 마련
  - 기존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를 문화정책위원회로 재편하는 방안 검토
- 공공부문 수평적·통섭적 문화거버넌스 네트워크 체계화
  -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간 명확한 역할분담 기준 제도적으로 마련
  - 문화분야 전문기관의 전문성 강화 및 독립성 보장
  - 서울시, 광역문화예술기관, 자치구, 자치구 문화예술기관간 문화정책 협의 채널 구축

⑨ 문화도시 : 서울의 문화적 재구성을 위한 원리로서 문화도시

- “문화다양성과 복합성”의 측면에서 우애와 공존을 지향하는 도시
- “600년 역사와 오늘의 삶”이라는 측면에서 역사와 풍경이 존중받는 도시
- “시민의 참여와 예술가의 창조”라는 측면에서 민주주의와 상상력이 넘치는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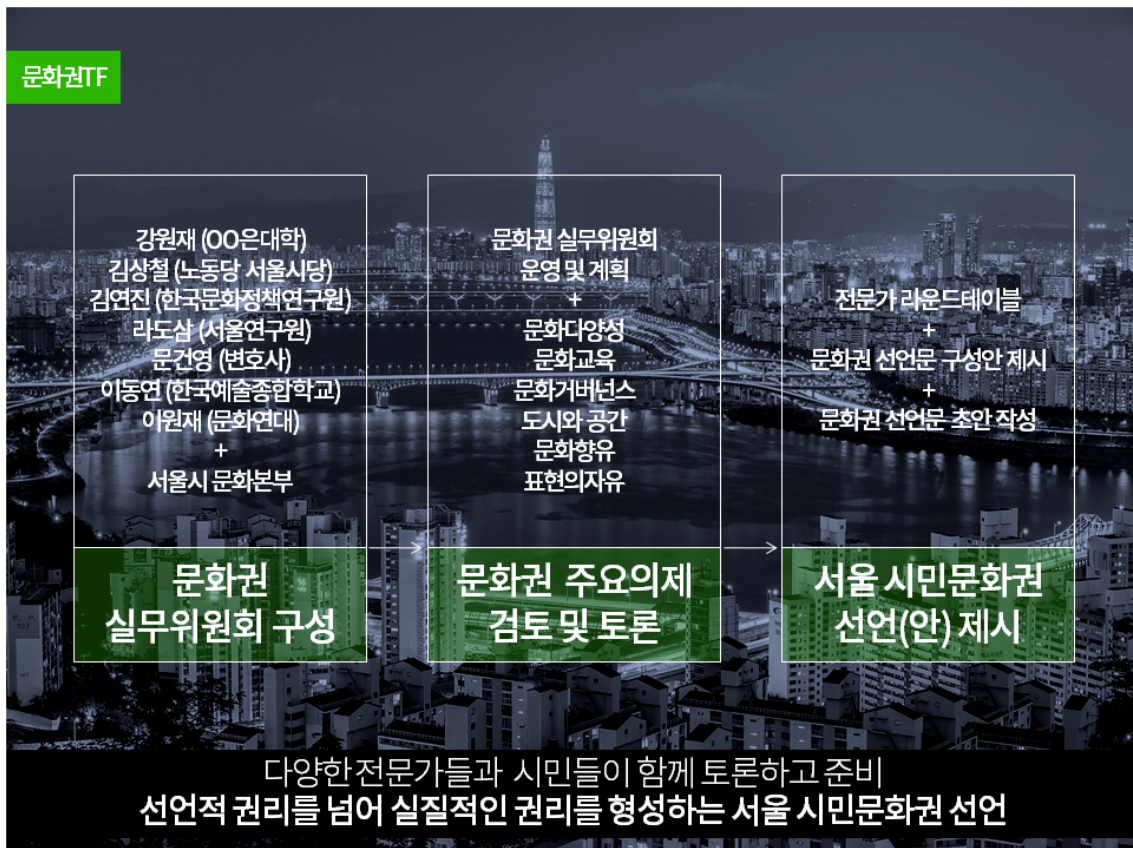
[그림] 서울시 문화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본 원칙 및 방향



### 3. 서울형 문화권 선언을 위한 조사용역의 진행 과정

- (1) 서울형 문화권 선언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
- (2) 서울형 문화권 주요 의제 검토 및 토론
  - ① 서울형 문화권의 개념, 범주 등 논의
  - ② 서울형 문화권 주요 의제별 검토 및 토론
    - 문화다양성, 문화예술교육, 거버넌스, 도시 및 공간, 문화향유, 표현의 자유 외
- (3) 서울형 문화권 선언(안) 작성 및 제시

[그림] 서울형 문화권 선언을 위한 조사용역 진행 과정





---

## II. 서울형 문화권 선언을 위한 조사연구 내용

### 서울형 문화권 선언을 위한 조사용역 보고서

---

#### 1. 서울형 문화권 선언의 기본 방향 설정

##### (1) 서울형 문화권 선언의 기능 및 목표

- 문화권선언을 통해, 일반시민들이 '문화권'이라는 것을 권리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함
- 문화영향평가와도 연결되어야 하고(문화기본법상 '문화권'이 모호), 나아가 조례상 반영(개정 또는 제정)을 염두에 두고 임해야 함

##### (2) 서울형 문화권의 범위

- 문화에 대한 시민적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접근권, 다양성 등 언급
- 경제적 요인으로 향유가 제약되는 경우도 있으니, 단순히 향유할 권리보다는 더 폭넓게 작성해야 함
- 생산한 문화적 권리에 대해서도 다뤄야 함(창작자의 권리)

##### (3) 서울형 문화권 선언의 작성방안

- 시민이 요구하고, 시가 답하는 '쌍방의 약속'이 담긴 구체성, 구속력, 실행력 있는 선언으로 작성해야 함
- 전문에 구속력이 없는 비전을 담고, 조항은 구속력 있게 가야 함
- 인문학자가 전문을 맡고, 법학자가 권리들을 명료하게 처리하는 것도 방법임

##### (4) 서울형 문화권 선언의 주요 항목

- 주요 의제
  - 문화다양성, 교육·학습, 환경, 참여(거버넌스), 정체성, 평등(향유), 자유
- 서울이 '국제도시'가 됨에 따라 변화된 패러다임이 반영될 필요 있음
- 대중문화 혹은 실질적 여가활용과 관련된 주제도 다뤄야 함

■ 선언의 열개

- 시민의 문화적 권리에 대해 ‘市’의 책임·의무를 말하는 선언의 열개는 좋지만, 시가 할 수 없는 범위도 존재

- 예를 들어 대중문화와 관련된 방송심의 등은 중앙정부의 기능으로 광역의 위상을 벗어나기 힘들

- 국가와 상호보완 측면에서 문화권이 다뤄져야 함

■ 표현의 자유

- 최근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쟁점보다는 예술활동의 자유 측면에서 논의되고, 학술영역에서도 저작권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함

- 다만, 자유를 권리화하여 선언에 담는 것이 의미는 있으나, 기존 법률체계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와 충돌될 수 있음

■ 매체

- 퍼블릭 액세스 등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권리를 담는 것 의미 있음

- 문화다양성 혹은 참여(거버넌스) 중 어디서든 다뤄야할 문제임

■ 문화공동체

- 언어, 인종 측면으로 ‘공동체’를 다루면, 문화다양성과 중복되고, 문화동아리 등 일상 속 공동체로 다루면 평등(향유)와 중복되는 문제 있음

- 추후 논의진행 상황을 봐서 공백이 생기면 의제에 반영

## 2. 문화다양성 분야

### (1) 조사 및 토론의 주요 내용

#### ■ ‘문화다양성’ 관련

- 다양성을 다룰 때, 우선순위도 고려해야 함. 예를 들어 새터민과 이주노동자, 다문화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문화다양성을 얘기해야 서울의 현실이 반영됨

- 보편적인 제도가 규정을 넘어서는 탈경계를 선언해야 자발적, 주도적인 선언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포스트담론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라는 개념이 소멸 될 수 있음

- 문화다양성의 일차적 책임이나 역할에 대한 서울시의 명시적 의무 규정 필요함

- 문화다양성 보장을 위한 정책적·행정적 수단에 대해 고민 필요함

- 문화권선언은 어린이선언과 같이(예, ‘어린이를 때리지마십시오’) 구체적인 액션을 그대로 선언에 담는 것이 효율적이나, 문화권선언은 보편적인 어린이 선언과는 다르기 때문에 실천언어로 담는 것이 어려움

⇒ 구체성에 대한 부분도 적정수준을 잘 유지해야 함

#### ■ 문화권선언의 주체와 주어문제

- 시민이 제안하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논의가 상향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현재상황과는 맞지 않고, 지자체로서 시민의 문화권을 정의하고 보장해주기 위한 시작이므로 현재의 접근도 의미 있음.

- “~을 요구한다.”라는 형식을 빌리면 시민이 주어가 되지만, 과연 시민의 제안을 시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의문 있음 (예, 인권헌장)

- 가이드라인 내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 합의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함

#### ■ 문화권시민위원회 구성

- 문화다양성의 지리적 시각화가 가능하고, 이를 활용해 지리적인 대표성도 고려해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시민위원회를 구성

- 예) 서울에서 새터민이 가장 많은 곳에서 새터민 대표가 나와야 함

## (2) 소결

### ■ ‘문화다양성’ 원칙 관련

- ‘문화다양성’은 문화권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전문에서 서술

### ■ 문화백화현상 관련

- 문화백화현상과 관련된 논의는 ‘환경’ 분야에서 논의

### ■ 문화권선언의 주체

- 문화권선언은 실무협의회에서 초안을 준비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시에서 선언하는 형태로 추진

### 3. 문화예술교육 분야

#### (1) 조사 및 토론의 주요 내용

- 국가적인 교육의 비전은 사회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창의성 함양인데, 개개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 스웨덴의 교육목적은 ‘비판적 민주시민 양성’
  - 개인이 있어야 공동체가 있다는 관점 필요
- 아난팔로, 벨기에 ABC 등 ‘예술이 곧 교육이다’
  - 장르별 교육이 아닌 예술을 통한 교육이 필요
- 마을공동체, 마을예술창작소 등 자연스레 상호학습의 구조를 만드는 경험학교 방식 바람직함
- 문화예술교육에 있어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으므로,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약속 선언이 필요
  - 서울시와 교육청MOU를 통한 자유학기제 활용 등
- 최근 취미공동체, 관심공동체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중요한 사회자본으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
- 문화공간에 대한 선언도 중요
  - 동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중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발굴 및 운영방안 마련

#### (2) 소결

- 조항제목 : 문화예술교육과 학습
- 문화예술학습

-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학습으로 전환
- 기존에 하고 있는 예술교육(장르적 기술을 가르치는)을 넘어서는 방향성 제시 필요

■ 기본방향

- 민주시민을 위한 시민문화 교육
- 개인의 행복을 위한 자기자신에 대한 이해와 성찰
- 이에 기반한 이웃, 사회, 세계와의 소통

■ 키워드 : 예술적 삶, 상호학습, 경험학습, 취미공동체

■ 대상

- 학생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되, 직장인까지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 직장인의 취미공동체는 중요한 사회자본임

## 4. 거버넌스 분야

### (1) 조사 및 토론의 주요 내용

- 거버넌스 : ‘통치’와 ‘협치’라는 두가지 의미. ‘통치’에서 ‘협치’로의 방향성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분권화 필요
  
- 정책의 계획 / 집행 / 평가단계 중 각 단계별 거버넌스 형태와 대책 상이
  - 현재 계획/평가단계에서 참여가 많고, 집행단계는 거의 참여 없음
  - 문화거버넌스가 계획에서 집행단계로 넘어가려면, 그것에 대한 명확한
  
- 시그널과 향후 프로세스에 대한 선언이 필요
  - 계획단계의 거버넌스
  - 가장 활발하고, 계획단계의 거버넌스 형태는 위원회 운영이 가장 많음
  - 현시점에서 위원회의 개수는 줄이고, 권한은 늘리는 방향으로 나가야함
  
- 집행단계의 거버넌스
  - 현재 민간위탁은 재단 위탁(공공위탁) 수준이므로, 실질적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민간이 새로운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줘야 함(민간위탁의 개념 세분화 필요)
  - 도시재생 등 행정 각 분야에 문화 관련된 사업이 많은데, 사업시행시 예술가들의 참여를 의무화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

### (2) 소결

- 거버넌스를 권리로 선언
  
- 市 정책에 참여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횟수/금액) 시행
  - 계획/집행단계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준 및 현황에 대한 연구 필요
  
- 집행단계의 거버넌스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재구조화 필요

- 시와 구와의 관계 재정립 필요(생활문화영역 등 구로 이관시)
- 전문가위원회가 아닌 시민위원회 구현을 위한 추가논의 필요



## 5. 도시와 공간 분야

### (1) 조사 및 토론의 주요 내용

#### ■ 공공서비스의 문화자산화

- 시에 있는 문화시설 등을 시 각종재산을 신탁으로 넘겨서 시장이나 시의회의 손이 닿지 않도록 운영하여 이 공간은 영구적으로 문화적 기능하게 만들어야 함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고정적이나, 이조차도 시장, 시의회의 의지로 쉽게 용도변경됨)

- 문화와 관련된 시설을 위계화, 즉 스케일별 시설배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 공공이 시민에게 투여되는 에너지와 활동을 특정 공간과 링크시키면서 공공서비스가 제공되어야 체감도가 높아짐

#### ■ 서울문화재단의 역할 재규정

- 현재 서울문화재단은 사업단위로 운영되고 있고, 사업보다는 재산관리에 집중해 보존과 확대만 염두하는 것 고려해야함

- 10~15년전 규정된 재단의 성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재단의 이사회에 시민이 참여하고, 본인의 자산을 투자해서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것도 한 방안임

#### ■ 정책 추진방향을 비전중심에서 문제해결중심으로 바뀌어야할 필요가 있음

### (2) 소결

■ 문화정책은 경제, 여성, 복지, 교육 등 모든 사업에 연결되는 어넥스(annex)로서 추진되어야함

- 현재는 예산의 일정부분을 할당하는 게 아니라 심의 방식이다 보니 산별적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타분야 사업 추진시 문화에 대한 예산을 할당해서 타분야에 대해 서포터 하는 방식으로 추진

- 시에서 시단위에서 시민들의 삶의 역사와 기억과 관련된 공간을 자산화하고, 마을권·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지역재생사업의 기부채납과 연결해서 푸는 방식을 고민해봐야 함

## 6. 문화향유 분야

### (1) 조사 및 토론의 주요 내용

- 문화선택권 제공시 정책대상에 대한 분류 및 그에 따른 맞춤형 정책 필요
  - 시민문화권의 대상은 모든 시민이고,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고려 필요
  - 현 시점에서 문화소외계층 고려대상은 직장인, 자영업자, 노년층이며, 시간관심·재원부족 등 문화적으로 소외된 이유에 대한 연구 필요
  
- ‘여가경력’ 지향
  - 100세 시대 도래에 따라, 기존 문화복지차원에서 나아가 여가개발 측면으로 접근하게 됨
  - 생애주기 초반부터 여가활동을 미리 체험하고 이것들을 지속하게 하자는 ‘지속이론’에 근거한 여가의 지속적 개발이 필요
  
- 문화향유에 대한 선택권 제공 (공급자 입장에서)
  - 수요자들이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통합정보망 서비스 필요
  - 서울은 정주형 도시가 아니므로, 정책이 거주 중심이 아닌 생활체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함
  
- 기업에서도 직원들의 일과 여가 양립을 보장을 위해 정시퇴근 등 다양한 제도 도입 시도
  - 이직률이 높은 중소기업도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직원들의 여가시간 보장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음 ⇒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있음
  - 다만, 직장에서 강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면 안됨
  
- ‘문화를 통한 행복지수’ : 본인의 문화생활 향유에 대한 진단 필요
  - 서울시 차원에서 개인이 본인의 삶에서 문화수준을 진단해 볼 수 있는 ‘문화를 통한 행복지수’등 개발 필요
  - 서울시민 개인의 자가진단지수 데이터화 가능 (예, OECD의 BLI 지수)

### (2) 소결

■ ‘시민문화권에 있어서의 평등·향유’ 원칙 관련

- 시민문화권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전문에서 서술
- 문화소외계층과 경제적 소외계층이 다르다는 인식제고를 위한 선언 필요

■ ‘문화권’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필요

- 현재는 산업시대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생애주기 설정에 따른 의미 변화 필요

## 7. 표현의 자유 분야

### (1) 조사 및 토론의 주요 내용

- 문화권 증진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 보장에 있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고민 필요
  - 선언문의 지향은 넓을 수 있지만 결국, 행정범위 안에서 약속해야함
  - 다만, 차별금지법 없이도 '인권선언'에 차별금지 선언을 한 만큼 '진실한 표현은 보호되어야 한다' 정도의 선언은 가능할 수도 있음
  
- 서울시 조례, 내규 등에 '공공의 안녕' 등과 같이 포괄적인 단어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는 문구 등에 대한 검토필요

### (2) 소결

- 광장, 공원 등 도시시설물 사용허가시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함
  - 나아가, 허가제보다는 신고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서울광장은 신고제인 반면, 광화문광장은 허가제)
  
- 공공저작물 관리 개선(CCL인증 등) 및 정보공개율 증가를 통해 서울시민의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등을 보장해줘야함
  - 창작자 권리확대와 공정이용,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 III. 서울형 문화권 선언 관련 국내외 사례

서울형 문화권 선언을 위한 조사용역 보고서

---

#### 1. 대한민국, <문화헌장>

문화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의 기초이다. 문화는 시민 개개인이 삶의 다양한 목표와 염원들을 실현해 나갈 자유로운 활동의 터전이고, 공동체를 묶어주는 공감과 정체성의 바탕이며,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 의미, 아름다움의 원천이다. 문화는 정치, 경제, 사회의 전 영역에서 인간의 품위와 생명의 존엄을 모든 가치의 중심에 두는 사람의 사회를 열게 하며, 시민생활의 질을 높여 모든 이가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한다.

보존할 것을 보존하고 바꿀 것을 바꾸며 성찰과 희망을 버무려 과거, 현재, 미래가 만나게 하는 것이 문화의 역동성이다. 우리가 전통의 가장 좋은 부분들을 이어받고 변화의 시대적 요청들을 슬기롭게 수용하여 미래를 향한 열린 사회, 정의로운 사회, 아름답고 넉넉한 사회를 만들어 갈 창조적 동력은 문화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이가 다 같이 누려야 할 문화적 권리들을 확인하고 공동체의 초석이 될 문화적 가치들을 찾아내며 사회발전의 문화적 원칙들을 천명하여 인간다운 삶의 토대를 다지고자 2006년 5월 이 헌장을 공포한다.

1. (기본 권리) 문화적 권리는 시민의 기본 권리이다. 모든 시민은 부당한 검열, 감시, 위협에 시달리지 않을 권리, 양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을 권리,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권리, 이 땅 어디에서나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갖는다.

2. (창조, 참여, 향유의 평등한 권리) 문화적 권리는 시민의 평등한 권리이다. 모든 시민은 계층, 지역, 성별, 학벌, 신체 조건, 소속집단, 종교, 인종 등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시민은 삶의 질을 높일 창조적 문화 환경과 여가를 누릴 권리, 문화 교육과 예술 교육을 받을 권리, 평생 학습을 추구하여 스스로 기회를 창출할 권리, 모든 분야의 지식 정보와 전달 매체에 평등하게 접근하고 자유로운 표현 수단을 가질 권리, 자신의 문화적 삶에 영향을 주는 공공 정

책의 결정과 그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3. (공동체의 문화적 토대) 사회 공동체는 더불어 사는 삶의 토대가 될 기본적인 문화적 가치들을 늘 확인하고 존중해야 한다.

(가)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문화적 가치들에는 사람과 생명의 존엄, 평화와 관용, 이웃을 향한 배려와 선의, 공정성과 연대, 자연과의 상생이 포함된다.

(나) 아름답고 선한 것의 존중, 공적 가치의 옹호, 역사적 기억과 경험의 공유, 옳고 그름에 대한 이성적 판단과 같은 문화적 능력도 공동체를 묶어줄 시민적 덕목의 원천 이고 상호 신뢰, 협력, 유대의 기초이다.

4. (다양성의 원칙) 문화 다양성은 개인적 집단적 정체성과 자주성의 토대이고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다원성의 원리이며 평화와 공존의 기틀이다. 시민은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미를 생산하고 가치를 표현하며, 자신이 원하지 않는 가치, 이념, 관습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순종을 강요받지 않는다. 시민은 나라 안팎의 다양한 문화들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여 세계의 문화 다양성과 평화를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5. (약자와 소수자의 문화권) 사회적 경제적 약자와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는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누구도 뒤처지거나 억눌리는 일 없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창조적인 문화 환경 속에서 평화, 정의, 상호 존중, 이해, 나눔의 정신을 가진 완 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정신적 신체적 장애인은 그 존엄성의 보장과 자립의 촉진,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개인적 발전을 기하는 데 필요한 문화적 지원을 제공받아야 한다.

(다) 불우한 환경의 여성, 노약자, 고아, 독거노인, 혼혈인,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 경제적 소외의 조건 속에 살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그 생활수준을 개선하고 삶의 품위를 높이기 위한 문화 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라) 외국인, 이주민,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언어적, 민족적 소수자와 소수 집단은 이 땅 어디에서나 시민과 동등한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자신들의 고유문화를 향유하고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할 때에도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마) 성적 소수자를 포함한 문화적 종교적 소수자와 소수집단은 자기 의사에 반하는 문화 정체성을 강요받지 않는다.

6. (문화유산 보존의 원칙) 민족의 경험과 염원이 담긴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역사 유적들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이의 공유 자산이고 민족적 정체성의 바탕이며, 훼손할 수 없는 인류 문화유산의 일부이다. 전통문화 유산과 역사 유적은 온전하고 이름답게 보존되고 민족의 창조적 업적에 대한 존경과 애착을 고취할 수 있도록 모든 이에 개방되어 새로운 문화 창조와 문화 발전의 기반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문화적으로 중요한 자연유산과 고유의 생태적 요소들도 넓은 의미의 문화유산에 포함된다.

7. (지역문화 창달의 원칙) 지역 문화는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는 활력의 원천이며 지역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정체성의 토대이다. 지역 문화를 가꾸어 나가는 일은 주민의 자주적 참여와 주민 자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지역 주민은 자기 고장의 언어, 민속, 전통 같은 고유의 표현 형식들을 포함한 자생적 문화 자원들을 보존하고 문화 발전에 창조 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8. (예술과 학문의 자유 원칙) 예술과 학문은 창조와 혁신의 원천이며 사회의 지적, 감성적, 윤리적 발전의 토대이다. 시민은 누구나 그 능력과 재능에 따라 예술 창작과 학 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가 이룩한 창조적 성과는 정당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예술과 학문은 과도한 상업주의와 이념적 독선의 폐해로부터 보호되고 표현 사상, 탐구의 적극적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시민은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발전과 응용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9. (민주주의의 문화적 토대) 민주 사회를 튼튼히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데는 정치, 경제, 사회를 비롯한 시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민주주의의 원칙, 제도, 가치를 존중하고 함양하는 문화적 토양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유, 평등, 정의, 자율 및 연대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땅에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고 발전할 수 있는 문화적 토대를 힘써 다져나가야 하며, 주요 국가정책에서 민주주의 문화의 기초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

10. (경제 발전의 문화적 목표) 문화는 경제 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임과 동시에 경제 발전의 궁극적 목표이다. 경제 발전과 번영은 언제나 인간답고 품위 있는 삶의 실현이라는 문화적 목표를 지향해야 하며, 그 목표로부터 지속 가능한 발전의 동력을 얻어 내어야 한다.

11. (문화산업의 균형 원칙) 문화산업은 산업적 활동임과 동시에 시민의 정신생활과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문화적 활동이다. 문화산업은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 사이의 적절한 균



형 속에서 시민의 문화생활 수준을 높이고 정신적 발전을 도우며 문화의 국제 교류를 통해 나라와 나라, 국민과 국민들 사이의 상호 존중과 이해, 세계 평화와 안전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의 문화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시장 경쟁력의 열세에 놓인 문화 산업 분야들이나 시장에만 맡길 수 없는 예외적 분야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 12. (국가의 책무)

(가) 문화 권리 보장의 책무—국가는 이 헌장에 천명된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세우고 실시할 의무가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을 비롯한 공공의 문화기반시설들을 부단히 확충하고 봉사 체제를 강화하여 문화의 공공성과 문화 복지의 수준을 높이고, 시민의 생활 환경과 활동 공간을 문화의 관점에서 개선하며 법률과 제도에도 늘 문화적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

(나) 문화 활동 지원의 책무—시민의 문화적 능력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시민 생활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시민적 역량의 기초이며 행복한 삶의 토대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민 개인과 민간 단체들이 전개하고자 하는 교육, 자기계발, 창작등의 문화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며, 지역 간 문화 발전의 격차를 힘써 줄여나가야 한다.

(다) 제휴 협력의 원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간의 창의적 제안을 환영하고 존중하며, 시민의 문화적 삶에 관련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할 때에는 민간단체들과의 제휴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13. (실행의 약속)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헌장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재정적 조치와 그 밖의 구체적이고 유효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실행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시장의 영역도 이 헌장이 천명하는 문화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

## 2. 바르셀로나, <도시의 문화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헌장>

바르셀로나 2002년

바르셀로나 시의회 - 인터아츠재단(Interarts Foundation)

### 전문

문화적 권리는 세계인권선언에 인정하고 있는 보편적 권리로서 권리 주체는 개인 또는 단체이며 권리 행사는 개별적으로 이뤄진다. 문화적 권리는 국가가 모든 행정 구성을 통해 보장한다.

이러한 문화에 대한 인권으로부터 다양한 문화적 권리가 발생한다. 이는 인간 존엄성 및 여타 인권(예: 의사 표현, 정보, 결사 또는 양심 등의 자유에 대한 권리)을 행사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서 특이성과 창의성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한다. 문화적 권리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제15조에 명시되어 세계 인권 선언에 추가되었다. 국제규약은 1976년 발효되었으며 147개국에서 비준됐다.

문화적 권리는 누구든지 사회의 지적, 과학적 발전으로 인한 혜택을 누리며, 지적, 과학적 및 예술적 산물(물질적 및 기타)을 즐기고 문화 상품을 보호하고 문화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의미한다.

이 중 문화생활을 영위할 권리는 최근 들어 국제기관, 특히 유엔사회권위원회 산하 기관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현대 사회는 새로운 문화적 관계, 그리고 이들 관계가 경제와 공동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이러한 인권 영역을 더욱 자세히 정의해야 하는 필요성이 높아졌다. 위원회는 2002년 작업반을 구성하고 마닐라와 바르셀로나에서 문화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재구성하기 위한 컨퍼런스를 각각 개최했다.

작업반은 바르셀로나 시의회와 인터아츠재단의 공동 주최 하에 2002년 11월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도시의 문화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헌장(Charter of Cultural Rights and

Commitments in the City)을 발표했다. 현재 유엔위원회는 향후 유엔 문서를 정의하기 위해 현장을 참조하고 있다. 2004년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문화포럼(Universal Forum of Cultures)을 공식 평가 기준으로 삼아 이를 지속적으로 수정 및 개정해나갈 예정이다.

이 과정은 전 세계 백여 개 지방 자치 단체가 서명하고, 1998년 바르셀로나가 비준하였으며, 이후 다양한 국제 포럼에서 승인된 도시 인권 현장을 따른다.

문화생활을 영위할 권리는 도시 공동생활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권리이다. 이 권리는 객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 계약으로 이행을 보완해야 한다. 즉, 시민들이 지역 사회를 위해 책임져야 하는 의무의 관점에서 특정 보장에는 특정 의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책임 또는 의무는 세계인권선언 29조에도 반영되어 있다.

*모든 사람은 그 인격의 자유롭고 완전한 발전이 그 안에서만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의무를 진다.*

따라서 문화적 권리를 확인하고 이행하는 과정은 문화를 공동으로 구성된 공익으로 간주하는 논리적 추론에서 유래한다. 공익은 글로벌 시장을 비롯해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영역에서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이해관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문화적 권리는 일반 규범에서 기인했으며, 특히 도시 환경에서 보다 쾌적하고 창의적인 공동생활을 위한 기반으로 사용될 수 있다.

도시의 문화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현장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규약을 통해 인정받고 상세히 설명된 이들 문화적 권리를 도시 환경에서 증진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세계인권선언에 기반한 규범 문서는 이들 문화적 권리를 정치적이고 점진적이며 교류적 활동으로 표현했다. 즉, 공동생활을 위한 우선순위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이고, 이들 우선 사항이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점에서 "점진적"이고, 대화와 협상이 이행 과정의 기반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교류적"이다.

현장은 문화적 권리가 법률 문서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권리는 공동생활에서 도덕적 개념으로 존재하며 성숙한 사회는 규범 문서에 이를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강력한 규범이 아닌 지도, 즉 문화가 도시 생활의 중요한 요소로 기능하는 공동생활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지도로서의 문서를 제안한다. 문화적 공동생활은 오늘날 도시 기후를 나타내지만 이를 규제하는 규범을 도시 생활의 다른 측면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의하기는 힘들다.

이 문서에서 강조하는 문화적 권리는 도시에서 공동생활의 보다 형식적이고 물리적인 측면을 규제하는 기존 지시적 규범에 존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여기서는 시민과 지자체에 일련의 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본 문서는 국제 규약 제15조의 정신과 표현을 반영하고 있으나 법적 용어가 아닌 시민 또는 정치적 용어로 표현되어 있다.

## 1. 시민의 문화적 권리

### A. 문화 공간으로서 도시에 대한 권리

시민은 도시에서 아름다움, 창의력 및 사회성의 가치를 영위하며 도시를 통해 표현적 및 창의적 욕구를 충족할 권리를 갖는다.

시민은 개인의 미적 감각(의복, 화장 등)과 일상 용품(자동차, 주택 등)을 통해 도시 환경에 자신을 표현할 권한을 갖는다.

시민은 문화, 의료 및 환경적 균형성이 지속 가능성 계획의 필수 요소를 형성하는 도시 환경을 영위할 권리를 갖는다.

시민은 공공 공간에 문화 활동과 창작물을 제시하고, 참가자 및 관람자와 대화할 권리를 갖는다.

시민은 물리적, 통신적 및 가상 환경에서 문화 공간을 갖고 이를 지속적이고 명시적으로 영위하고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B. 접근, 보호 및 차별 금지

모든 시민은 지역에서 문화 활동을 영위하고 자신 또는 제3자의 문화 프로젝트를 알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시민은 문화 콘텐츠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문화에 대한 존중을 침해하는 상업적 또는 정치적 메시지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공공 문화 환경을 보호할 권리를 갖는다.

시민은 도시 환경에 제시된 모든 문화, 특히 가장 취약한 문화를 보호할 권리를 갖는다. 특히 역사, 언어, 자연, 전통 및 창조적 연속성과 관련하여 도시에 깊은 뿌리를 두고 고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문화를 고려해 보호해야 한다.

시민은 여가 시간을 통해 적절한 문화적 기회를 누리고 일상 생활에 맞춰 여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시민은 적절한 운송 수단을 사용하며 안전상의 위협 없이 도시에서 문화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갖는다.

이동이 어려운 시민은 어려움 없이 문화 시설을 이용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들의 조건에 맞는 특정 문화 상품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청소년은 자신의 교육적, 표현적, 창의적 욕구에 맞는 문화 상품을 즐길 권리를 갖는다.

병원 또는 재활 시설에 거주하는 시민은 생활환경에 맞는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외부 문화 프로젝트에 협력할 권리를 갖는다.

저소득 또는 무소득 시민은 도시의 문화 상품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받을 권리를 갖

는다.

시민은 소비자로서 공적 및 사적 거래 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권리를 갖는다.

### C. 프로젝트 참여, 협력 및 제작

시민은 공동체가 공공 공간에서 조직한 모든 문화, 축제 또는 예술적 표현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시민은 세계 문화의 표현 양식을 수용하고 도시 환경에서 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

시민은 도시의 문화생활에 대한 공개 토론에 참여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가질 권리를 갖는다.

시민은 문화 단위로 간주되는 지역의 공동생활 공간(예: 동네, 거리)에 대한 제안서를 개발하고 공적 자원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시민은 제도적 한계 또는 경계 없이 도시 안팎에서 문화 협력 활동 및 제도를 수립할 권리를 갖는다.

시민은 비공식 프로젝트를 위한 구조를 포함하여 도시에서 프로젝트 요건에 가장 적합한 법적 및 행정 구조를 통해 자신이 실현하고자 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시민은 문화 및 문화의 다양성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 공동생활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 인권 ombudsman의 중재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 D. 기억, 문화유산, 영성

시민은 기억, 정체성 및 창작에 대한 동시대 대화에서 중요하게 간주되는 이동 또는 고정 요소

를 보호할 권리를 갖는다.

문화 단체에 소속된 시민은 도시 환경에 집단의 기억을 반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향후 도시가 이를 보호 및 탐구할 수 있다.

시민은 도시 표현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에 자신의 영성을 반영할 권리를 갖는다.

시민은 자신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장르 전통과 이에 따른 문화적 표현을 지킬 권한을 갖는다.

시민은 유명 및 전통 유산을 통해 표현된 도시의 살아 있는 기억을 지킬 권리를 갖는다.

시민은 공립 박물관, 기록보관소 및 기타 도시 시설의 카탈로그 형태로 지역 사회의 기억을 지킬 권리를 갖는다.

## E. 예술 교육, 소통 및 문화 지식

시민들은 특히 도시 모국어 및 결속력과 소통을 통해 발전해온 언어의 관점에서 거주 도시 및 다른 도시 공동체의 현재 및 과거를 이해할 권리를 갖는다.

시민은 학교 교육을 시작한 후 교과 과정을 통해 예술 및 문화 교육을 받고 가까운 지역에서 보충 교육 시설을 이용하여 표현 및 창의력을 극대화할 권리를 갖는다.

시민은 도시 환경에서 시기적절하게 문화 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 받고 공공 및 민간 통신 수단으로 이들 정보를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시민은 전자 참조 방식 또는 공공 도서를 이용하고 문화 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시민은 문화 조직을 수립하고 작품을 창작하고 이들 분야에서 사업체를 설립하고 관리할 권리를 갖는다.

## 2. 시민의 의무

현장은 시민들에게 공동생활, 창의력 사회화, 문화적 권리 증진에 중요한 의무를 부여한다.

시민은 도시 문화생활의 주체이자 대리인이고 따라서 도시 문화의 영적, 창의적 및 합리적 발전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

시민은 공적 및 사적 공간에서 사회적 맥락에 맞춰 문화적 표현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시민은 도시 공공 공간에서 다른 시민 및 집단의 표현적 및 창의적 제안에 반응하기 위해 노력한다.

시민은 도시의 문화 지식, 특히 지속적으로 도시를 구성해온 문화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른 지역 문화에 익숙한 시민은 거주 지역(host community)의 문화를 배우고 참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시민은 가능한 모든 일반 시민, 특히 문화적 거리가 먼 이들이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노력한다.

시민은 문화 프로젝트 구현 시 지역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를 고려하기 위해 노력한다.

시민은 문화 활동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한다.

시민은 문화 정책 및 문화 자원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을 위해 도시가 제공하는 참여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시민들은 안정성, 연속성, 가시성 및 참여를 촉진하는 단체를 통해 가능하면 어디에서나 문화 활동을 조직하기 위해 노력한다.

시민은 가족의 소유물부터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기념품까지 도시의 공공 및 사적 문화유산



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시민은 도시의 문화를 증진하고 다른 문화 프로젝트와의 협력 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도시의 교육 공동체는 다른 문화 프로그램, 특히 인접한 도시 공간을 공유하는 프로그램과 최대한 협력하기 위해 노력한다.

도시의 사업체와 기업은 기업 활동이 미치는 문화적 영향을 고려하고 후원 및 협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

정당, NGO, 기타 사회적 책임 운동은 도시는 물론 기타 지정학적 활동 영역에서 문화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

도시의 여성 조직은 창의성 개발 및 문화 참여를 위한 사회적 및 지적 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예술가와 문화 생산자는 공공 예술 공간을 보호하고 모든 시민을 자극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창의적 대화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청소년은 모든 문화적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서 도시 서비스, 특히 공동생활 및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창의적 에너지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한다.

### 3. 지자체 행정부의 의무

이들 의무의 대부분은 도시의 실제 문화적-정치적 조향에 이미 반영되어 있지만 지자체 행정부가 시민의 권리 및 의무에 대응하는 형태로 이를 명시화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자체 행정부는 예술, 기억 및 창의적 공동생활에 매우 민감한 도시 환경에서 모든 시민이 문화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지자체 행정부는 토론 및 의사 결정 구조의 관점에서 문화적 대상으로 지정된 공적 자원을 차별 없고 투명하고 열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지자체 행정부는 도시에서 문화, 특히 소수의 문화를 증진하기 위한 자원 봉사 단체 및 전문 프로젝트 구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지자체 행정부는 시민들이 표현적 및 창의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설립된 모든 공공시설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지자체 행정부는 시민들이 모든 통신 수단을 적절히 이용하여 문화 정보, 지식 및 토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지자체 행정부는 도시의 문화를 증진하고 국제 파트너, 특히 개발도상국의 파트너와의 협력하는 문화 프로젝트를 장려하기 위해 노력한다.

지자체 행정부는 도시의 예술 교육, 문화유산 연구, 문화적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지자체 행정부는 모든 통신 수단을 활용하여 문화 프로젝트와 기업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재정 조치를 채택하기 위해 노력한다.

지자체 행정부는 독립적인 중재 시스템을 설치하여 도시의 문화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헌장에 명시된 문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 3.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2001년 11월 2일

유네스코 총회는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권과 정치권 그리고 경제사회문화 권리와 관련해 1966년의 두 국제 규약 처럼 인권과 기본 자유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국제 사회가 승인한 다른 국제 규약들을 유 념하고,

유네스코 헌장 서문에서 “문화의 광범위한 전파와 정의자유평화를 위한 인류 교육은 인간의 존 엄에 꼭 필요하며, 또 모든 국가가 상호 지원과 상호 관심의 정신으로 완수해야 할 신성한 의무 이다.”고 명시한 바를 상기하며,

다른 여러 목적보다 특히, 유네스코는 문자와 이미지에 의한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 하는 데 필요한 국제 협정을 권고하는 유네스코 헌장 제1조도 상기하고,

유네스코가 제정한 국제 규약 중 문화권 실천과 문화 다양성에 관련된 규정을 참조하며,

문화는 사회와 사회 구성원의 특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간주해야 하며, 예술 및 문학 형식 뿐 아니라 생활 양식, 함께 사는 방식, 가치 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함한다 는 것을 재확인하고,

문화는 정체성, 사회 단결 및 지식기반경제의 발전에 대한 현행 논의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을 인식하고,

서로 믿고 이해하며 문화 다양성, 관용, 대화 및 협력을 존중하는 것이 국제 평화와 안전을 가 장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임을 확인하며,

문화 다양성의 인식, 인류 화합에 대한 자각 및 문화간 교류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 연대를 소망하며,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은 세계화 과정이 문화 다양성에 대한 도전이기는 하지만, 문화와 문명간의 새로운 대화를 위한 조건을 형성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유엔체제 중에서 유네스코에 부여된, 문화 다양성을 알차게 하고 진흥하며 보조할 특별한 임무를 인식해,

다음 원칙들을 공포하고, 이 선언문을 채택한다.

## 정체성, 다양성 그리고 다원주의

### 제1조 문화 다양성 : 인류의 공동 유산

문화는 시공간에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이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는 집단과 사회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구현한다. 생태 다양성이 자연에 필요한 것처럼 교류혁신창조성의 근원으로서 문화 다양성은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공동 유산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혜택으로서 인식하고 확인해야 한다.

### 제2조 문화 다양성에서 문화 다원주의로

점점 다양해지는 우리 사회에서는, 함께 살려는 의지와 더불어 다원적이고 다양하며, 역동적인 문화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과 집단의 조화로운 상호 작용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모든 시민을 포용하고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은 사회적 단결, 시민 사회의 역동성과 평화를 보장한다. 그러므로, 문화 다원주의는 문화다양성을 실현하려는 명백한 정책 표현이다. 민주 체제에서 분리할 수 없는 문화 다원주의는 문화 교류와 공공의 삶을 지탱해주는 창조적인 역량을 풍성하게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 제3조 발전을 위한 요소로서의 문화 다양성

문화 다양성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선택의 범위를 넓혀준다. 발전을 위한 근간 중에 하나인 문화 다양성을, 단지 경제 성장의 관점이 아니라 좀 더 충분한 지적감성적·윤리적·정신적 존재를 위한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

## 문화 다양성과 인권

### 제4조 문화 다양성을 보장하는 인권

문화 다양성을 지키는 것은 윤리적으로 의무이며,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과 뗄 수 없는 것이다.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실천은 특히, 소수 민족과 원주민들의 권리를 포함한다. 누구도 국제법으로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데 문화다양성을 이용할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 문화 다양성을 위한 환경으로써의 문화권

문화권은 인권을 구성하는 데 뗄 수 없으며, 보편적이고 개인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요소이다. 창의적 다양성이 번성하려면 세계인권선언 제27조와 경제사회문화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 제13조 및 제15조에 명시된 문화권을 완전하게 실천해야 한다. 모든 이는 자신이 선택한 언어로 특히, 모국어로 자기 작품을 창조하고 배포할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문화 다양성을 전적으로 존중하게끔 질 좋은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 인권과 기본 자유를 존중하면서 그 바탕 위에 자신이 선택한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고, 문화적 실천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제6조 모든 이를 위한 문화 다양성

문자와 이미지로 된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동시에, 모든 문화가 자신을 표현하고 알릴 수 있게 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매체 다원주의, 다언어주의, 디지털 형식을 포함한 예술과 과학적, 기술적 지식에 대한 동등한 접근, 표현과 배포를 위한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문화의 가능성은 문화 다양성을 위한 보장이다.

##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

### 제7조 창의성의 원천으로서의 문화유산

창조는 문화적 전통에 의존하는 동시에, 다른 문화와 접촉하면서 풍성해 진다. 이 이유로 모든 유형의 유산을 보존하고 고양하며 인간의 경험과 염원의 기록으로서 미래 세대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창의성을 진작하고 진정한 문화간 대화를 고무할 수 있을 것이다.

### 제8조 특정한 유형으로써의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특수성

오늘날 창조와 혁신의 거대한 가능성을 연 경제와 기술의 변화 시기를 맞아 작가와 예술가의 권리에 대한 적절한 인식; 정체성, 가치, 의미의 척도로서, 단순한 상품이나 소비재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특수성에 비취 창작품 공급의 다양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제9조 창의성의 촉매로서의 문화정책

사상과 작품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동시에, 문화 정책은 지역과 세계 차원에서 강력한 수단인 문화 산업을 통해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배포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각 국가는 국제적인 의무를 지키며, 운영적 지원이든 적절한 규제든 적합한 수단을 통해 문화 다양성을 규정하고 실천해야 한다.

## 문화 다양성과 국제연대

### 제10조 세계적 창조와 배포를 위한 역량 강화

현재 세계 차원에서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과 유통의 불균형에 직면해, 모든 국가 특히, 발전도상국과 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국내외적으로 생존력 있고, 경쟁력 있는 문화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 제11조 공공 분야, 민간 분야, 시민 사회와의 협력 강화

지속 가능한 인간 개발에 핵심인 문화 다양성의 증진과 보호를 시장 기능만으로는 보장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간 분야와 시민 사회와 협력을 통한 공공 정책을 강조해야 한다.

## 제12조 유네스코의 역할

유네스코는 회원국에게서 받은 위임과 기능으로 다음과 같은 책임 있는 역할을 한다.

- (a) 여러 정부간 기구의 발전 전략에 이 선언문이 표명한 기본 원칙을 적용하도록 촉진한다.
- (b) 문화 다양성을 위한 개념과 목표, 정책을 마무리하기 위해 정부국제 정부간비정부간 기구 시민 사회·민간 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끔 판단 기준과 토론장을 제공한다.
- (c) 능력이 닿는 한, 이 다양성 선언과 관련된 분야에서 기준 설정인식 제고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추구한다.
- (d) 이 선언문에 첨부된 주요 행동 계획의 실천을 촉진한다.

### <첨부>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선언의 실천을 위한 실행 계획

유네스코 회원국들은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선언”을 광범위하게 전파하고 특히, 아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적적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문화 다양성에 대한 국제법적 기회를 명백히 고려하고 특히, 국가 그리고 국제 차원에서 발전과 정책 수립의 효과에 대한 연관성을 존중하는 맥락에서 문화 다양성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심화시키며,
2. 문화 다양성 증진과 보호에 상당히 기여하는 인식 증진 모델 및 협력 방식을 실천하기 위한 개념과 아울러 국가 및 국제 차원에서의 기본 원칙, 기준, 실천의 개념을 향상하며,

3.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집단의 참여와 포용을 증진하기 위해 문화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지식과 실천의 교류를 강화하며,
4. 인권의 핵심 부분으로서 문화권 내용을 이해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며,
5. 인류의 언어 유산을 보호하고, 가능한 다양한 언어의 표현·창조·배포를 지원하며,
6. 가능한 모든 단계의 교육에서 – 모국어를 존중하고 – 언어 다양성을 촉진하고, 유년기부터 여러 언어를 학습하도록 장려하며,
7. 교육을 통해 문화 다양성의 긍정적 가치 인식을 증진하고, 이런 목적에서 교과과정 구성과 교사교육을 향상하며,
8. 지식의 소통과 전달을 위해 문화적으로 적합한 방법을 보호하고, 충분히 활용하는 관점에서 적절한 전통적 교육 방법을 교육과정에 통합하도록 하며,
9. 교육 훈련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교육 서비스의 효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교육 도구로서 컴퓨터 사용법(digital literacy)을 알도록 장려하고,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며,
10.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언어 다양성을 증진하고, 개방된 모든 정보를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11. 관련 유엔 체제와 긴밀히 협조해 발전도상국가가 새로운 정보기술에 접근하도록 장려하고, 그들이 정보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우며, 자생적 문화 상품을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보급하고 발전도상국이 전 세계 교육·문화·과학 정보 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보 격차를 해소하며,
12. 매체와 지구적 정보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보호·보급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위해 공영 라디오와 텔레비전 서비스가 양질의 시청각 상품 개발에 기여하도록 특히, 이러한 상품을 배포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수립하도록 육성하며,



13. 특히, 구전 문화유산과 무형 문화유산을 포함한 문화적, 자연적 유산의 보존과 확대를 위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불법 유통을 퇴치하며,

14. 전통 지식 특히, 원주민들의 전통 지식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또 환경 보호와 자연 자원의 관리와 관련한 전통 지식의 공헌을 인정하고, 현대 과학과 지역 지식의 상승 작용을 촉진하며,

15. 창작자·예술가·연구자·과학자·지식인들의 활동성과 국제 연구 프로그램 및 협력 관계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발전도상국과 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의 창의적 역량을 보존, 확장하도록 노력하며,

16. 현대적 창의성의 개발과 창의적 작업에 대한 공평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보호를 확보하고, 동시에 세계인권선언 제27조에 따라 문화를 누릴 공공의 권리를 지지하며,

17. 발전도상국과 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의 문화 산업의 출현 혹은 강화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기간 설비와 기술 개발에 협력하며, 생존력 있는 지역 시장의 출현을 육성하고, 이러한 국가들의 문화 상품이 세계 시장과 국제 유통 네트워크에 배포되도록 도우며,

18. 이 선언문에 담겨진 원리를 증진하기 위해 고안된 운영 지원 협정 그리고/혹은 적절한 규정 체제를 각 국가에 부과된 국제적 의무에 합당하도록 개발하며,

19. 문화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공공 정책을 수립하는데 시민 사회를 적극 참여케 하며,

20. 민간 부문이 문화 다양성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촉진하며, 이를 위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간의 대화 창구를 수립한다.

회원국은 이 행동 계획에 설정된 목적을, 유네스코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고려할 것과 문화 다양성을 위한 상승효과를 확대하려는 시각을 갖고 유엔 기구, 기타 다른 정부간 단체, 비정부 단체와 협조할 것을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권고한다.

#### 4. 충청북도, <문화현장>

##### 충청북도 문화현장

맑은 바람 백두대간으로 흘러내리고 서편에 해가 지면 동편에 밝은 달이 솟는다. 청풍명월(淸風明月)로 문화를 닦고 흥과 신명으로 예술을 가꾼 여기는 대한의 중앙, 충청북도다. 예로부터 온유하면서도 강직했던 충북인들은 유달리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여 중원문화를 꽃피웠다.

홍익인간의 사상과 하늘의 은혜로 세상이 열린 후 선사와 고대를 지나 삼국시대에 충북은 융합소통의 중심지였다.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충북인들의 온화한 품성과 형형한 기백은 한국문명의 빛이 되었다. 충북문화에는 중용과 합리의 보편성과 올곧은 선비정신이 담겨 있으며 우륵과 난계의 예술혼이 빛나고 직지(直指)의 창의성과 의병, 동학, 삼일운동 사상이 녹아 있다.

목련과 모란이 어울려 아름다운 것과 같이 모든 국가와 민족의 다양한 문화는 소중하다. 충북인들은 나눔과 배려를 바탕으로 번영과 평화를 이루고 차별과 소외를 없애며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평등한 세상을 희망한다.

이제 충북인들은 서로를 존경하는 상생과 화합의 지혜를 살리면서 한국문화의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것이다. 선진 문화를 소망하는 충북인들은 문화현장을 하늘북 삼아 성숙한 문화사회로 나아가며 통일한국이 문화국가가 되고 지구촌이 문화세계를 이루는 여정을 시작한다.

- 1.(창조적 참여) 도민은 다양한 문화적 실천행위에 창조적이며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 2.(문화민주주의) 도민은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유익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창작 주체이다.
- 3.(표현의 자유) 도민은 지식과 정보, 예술과 가치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 4.(문화소외) 문화소외자는 정체성과 자존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원과 지지를 받으며 주류적 가치와 관습, 특정한 태도 등을 강요받지 않는다.

- 5.(미디어 접근권) 도민은 새롭고 다양한 미디어를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 6.(문화다양성) 도민은 국내외 지역문화가 충북문화와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것을 인정하며 다른 문화와 소통하고 이해하며 가치를 공유한다.
- 7.(충북문화 계승) 충청북도는 문화유산을 보존하며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킨다.
- 8.(문화예술진흥) 충청북도 및 시·군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을 지원한다.
- 9.(공사적 의무) 충청북도내 공공기관과 단체 및 기업, 도민은 문화적, 정서적 풍요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 10.(문화산업) 문화산업은 콘텐츠의 문화적 예외를 인정하며 경제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 11.(문화정책) 충청북도, 시·군 및 관련 기관의 문화정책은 우선되어야 하며 도민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제공한다.

---

## IV. 서울 시민문화권 선언(안)

서울형 문화권 선언을 위한 조사용역 보고서

---

### 제1장 전문

문화적 권리는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기본권으로서 1948년 유엔의 「세계 인권 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의 제 1조 3항<sup>1)</sup>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문화적 권리는 또한 1976년 유엔에서 제정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제15조 1항<sup>2)</sup>에 따라 문화와 예술의 접근과 향유 및 창작물에 대한 이익의 권리를 보장받을 뿐 아니라 그 권리가 확장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국제적 수준의 규약에 명시된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는 2013년에 제정된 「문화기본법 제4조<sup>3)</sup>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의 제3조<sup>4)</sup>에 근거하여 국내 법률에 의해서도 보장받는다.

「서울시 시민문화권 선언」은 이러한 국제규약과 국내 법률에 의거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와 삶의 질을 시민들과 서울시가 함께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한 선언이다.

---

1)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또는 인종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

2)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의 다음 권리를 인정한다. (a)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b)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c)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성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

3)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4)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국가 간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조 시민문화권의 정의

시민문화권은 시민들이 누려야 할 문화와 예술에 관한 표현, 창작, 분배, 향수, 접근의 권리로서 계층, 연령, 지역, 성, 성차, 인종, 종교, 국적에 상관없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는 정치, 경제와 함께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영역으로, 시민들의 일상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문화는 시민들이 일과 여가의 균형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해야 하며, 시민의 일상적 삶의 행복추구를 위해 기여한다. 문화는 시민들의 보편적인 권리이자 특별한 권리이며, 하나의 권리가 아니라 다양한 권리들을 갖는다. 그러므로 시민의 문화적 권리는 시민들 스스로의 자기결정에 근거하며, 서울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제도적, 법적, 재정적 분야를 지원한다.

## 제2조 사회적 권리와 의 관계

시민문화권 선언은 문화가 교육, 노동, 복지 등 사회에 미치는 권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사회적 권리 안에 문화적 권리가 신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시민의 문화적 권리는 교육, 노동, 복지 등 시민의 사회적 권리와 무관하지 않으며, 따라서 문화적 권리의 확대가 사회적 권리의 신장에 기여함을 주지하고, 사회적 권리가 문화적 권리의 확대를 위해 서로 연계해야 할 중요한 시민의 권리임을 강조한다.

## 제3조 시민문화권의 목표

시민문화권 선언은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진다.

1. 시민들과 서울시는 스스로의 문화적 권리가 보편적이면서 특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편적 권리로서 시민문화권은 시민들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로서의 문화권을 의미하며, 특별한 권리로서 시민문화권은 계층, 연령, 지역, 성, 성차, 인종, 종교, 국적에 따라 해당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해야 할 권리를 말한다.
2. 시민들과 서울시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누구나가 자신이 원하는 문화와 예술을 특별한 제약 없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하며, 문화와 예술과 관련한 기반 시설, 정보, 교육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자신의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창작활동을 통한 의견제시에 있어 자신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민들과 서울시는 시민들 개개인의 문화적 권리 신장을 위해 도시의 문화 환경이 계층, 연령, 지역, 성, 성차, 인종, 종교, 국적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도시의 문화경관이 훼손되고 침해되지 않고, 도시의 문화자원이 골고루 분배될 수 있으며, 도시 안에 다양한 문화공동체가 공생공존할 수 있고, 도시의 문화적 역량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서울의 문화적 권리가 신장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시민,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가 서로 협력하고 협치할 수 있는 도시 환경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문화적 협치의 가치, 과정, 절차가 잘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안내서를 마련해야 한다.

#### 제4조 서울시의 실천방향

서울시는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와 보호와 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방향을 가진다.

1. 서울시는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가 신장될 수 있도록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2. 서울시는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신장될 수 있도록 서울시정 계획에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서울시는 시민문화권선언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민문화권포럼'을 구성 및 운영하며, '서울시민문화권 선언의 날'을 지정하여 시민문화권의 가치와 목표를 시민들과 공유해야 한다.
4. 서울시는 시가 추진하는 문화예술 행사, 조직, 예산, 평가 등에 있어서 시민들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2장 시민문화권

### 제5조 보편적 권리

시민문화권은 세계인권 선언 제27조<sup>5)</sup>에 의거하여 보편적 권리를 가진다. 보편적 권리로서 시민 문화권은 시민들 누구나 문화예술을 차별받지 않고 창작할 권리,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시민들의 보편적인 문화권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권리를 갖는다.

### 제6조 문화향유권

시민은 문화예술을 다양하게 즐길 권리를 갖는다.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데 있어 시민은 계층, 연령, 성차, 지역의 조건에 따라 차별받아서 안 되며, 시민들 모두가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의 콘텐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 제7조 문화접근권

시민은 문화예술과 관련한 모든 콘텐츠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갖는다. 문화접근권은 문화예술과 관련한 모든 출판, 공연, 시각예술 등과 관련한 창작물을 향유할 권리며, 이러한 창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공간에 차별받지 아니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다. 문화접근권은 특히 문화예술과 관련한 물리적인 공간과 가상적인 공간에서의 정보를 쉽고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권리이다.

### 제8조 문화교육권

시민은 일상의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다양한 문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문화교육은 학교와 사회 영역 모두에서 시민을 문화향유자로만 한정하지 않고 자신들 스스로가 창작자로서 만족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 문화교육은 또한 시민들의 생애주기 별로 세대와 연령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5) 세계인권선언 제27조는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예술을 즐길 권리, 학문적 진보와 그 혜택을 함께 누릴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만들어낸 모든 학문, 문예, 예술의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9조 표현의 자유

시민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소통하고 싶은 것을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 표현의 자유는 문화예술인들만의 권리가 아니며 시민들 모두의 권리다. 시민들은 창작활동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특정한 표현물에 대한 비평을 포함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소통할 권리를 갖는다.

## 제3장 서울의 문화환경

### 제10조 서울의 새로운 문화환경

시민들과 서울시는 서울이라는 도시 속에서 문화의 다양성, 경관, 공공의 자원, 공동체와 개인들의 역량이 활성화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울에서 시민 문화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경쟁, 시장, 개발의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제11조 서울의 문화다양성

서울에서는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적 창조와 언어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에서 계층, 성차, 인종별로 살고 있는 시민들의 다양한 표현을 보장하고,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하며, 특정한 문화가 독점하지 않고 다양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2조 서울의 문화경관

서울의 역사를 형성해온 오랜 문화경관들이 파괴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서울시는 문화경관이 도시의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공공 문화의 다양한 실천들을 지원해야 하며, 시민들이 도시를 걸을 때 시각적으로 쾌적할 수 있도록 상업적 홍보물과 자극적인 선전물을 제한해야 한다.



### 제13조 도시 젠트리피케이션의 관리와 문화적 역할

서울의 모든 지역과 장소에서 토지가치와 임대료가 급속하게 상승하여 지역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시민들과 서울시는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에서 예술가와 예술적 공간들이 사적인 이익 추구로 인해 희생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문화와 예술이 도시 젠트리피케이션을 억제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도시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14조 서울의 문화자원

시민들과 서울시는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다양한 문화인프라들이 도시의 창조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화자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시의 문화자원은 문화예술 기반 시설만이 아니라 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 경관, 유·무형 문화유산, 전통적, 현대적 축제와 거리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서울은 시민들을 위해 이러한 문화자원들을 보호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도시가 돼야 한다.

### 제15조 서울의 문화공동체

시민들과 서울시는 다양한 문화공동체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화공동체는 시민들의 생활예술을 위한 창작과 제작, 관람과 참여를 둘러싼 모든 공동체를 의미한다. 문화공동체는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언어, 종족, 인종, 세대, 성차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말한다. 서울은 문화공동체의 다양한 집단적 활동이 침해받지 않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도시가 돼야 한다. 특히 시민들과 서울시는 마을단위에서 시민들의 문화적 활동이 창조적으로 유지되도록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자발적인 제작문화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 제16조 서울의 문화역량

시민들과 서울시는 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물리적, 제도적, 인적, 문화자원의 역량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서울의 문화역량은 기반시설, 문화인력, 콘텐츠 창작 및 문화교육의 활성화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은 시민들의 문화역량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준의 참여형 문화교육이 보장되고 일상화된 도시가 돼야 한다.

## 제4장 시민문화권을 위한 협치

### 제17조 문화협치의 가치

시민들과 서울시는 도시의 발전을 위해 문화협치를 중요한 가치이자 실천으로 인식해야 한다. 서울의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시민들 스스로가 서울시 문화정책의 계획수립, 실행 과정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 제18조 문화정책의 참여

시민들은 도시의 문화정책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서울시는 다양한 시민들이 문화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 제19조 문화활동의 참여

서울시는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문화사업에 민간 위탁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 수립과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제20조 평가와 의견수렴

시민들과 서울시는 문화예술 정책과 사업들, 그리고 문화예술에 영향을 주는 시정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시민들은 도시의 주인이자 문화예술 정책의 수혜자로서 서울시 문화정책에 대한 평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평가에 따른 개선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문화평가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기본법 제 5조 4항<sup>6)</sup>에 의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시민의 문화다양성을 위한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6)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장 시민문화권을 위한 시민들과 서울시의 의무

### 제21조 문화권을 위한 시민들의 의무

시민들은 도시의 문화활동과 문화경관, 문화자원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시민들은 문화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자신의 의무와 역할을 다해야 한다. 시민들은 자신의 문화적 권리를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도시의 문화발전과 타인의 문화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배려해야 한다.

### 제22조 공동체 문화를 위한 시민들의 의무

시민들은 도시 내 공존하고 있는 다양한 공동체문화가 파괴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민들은 자신의 표현과 의사를 서로 조정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

### 제23조 시민문화권의 확대를 위한 서울시의 의무

서울시는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가 침해받지 않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문화기반시설, 문화축제, 문화유산, 문화교육 등 각종 문화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 제24조 서울시민문화권포럼

시민들과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문화적 권리 확대를 시민이 직접 계획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서울시민문화권포럼을 구성한다. 서울시민문화권포럼은 각계, 각층의 다양한 시민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서울시의 문화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제25조 서울시민문화권 선언의 날

시민들과 서울시는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서울시민문화권 선언의 날을 지정하여 매년 서울시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추진한다.